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1
----------	-----

제출년월 : 2026년 2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2022.12.31.)에 따라 구 차원의 세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구만의 특화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실효성이 낮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및 수강료·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특화를 도모함

나. 종전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행정협의회 규정은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삭제 및 정비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 분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

라.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대상,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5. 12. 26.(금) ~ 2026. 1. 15. (목)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사항 반영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 대상아님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부패 영향 평가	○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반영	○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을 “자율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으로, “도모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를 “도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을만들기”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로,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를 “사업을 말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북형 마을공동체”란 성북구 주민이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내 관계와 공동 활동을 형성·발전시키는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이하 “주민모임 “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 내의 주민공동체 및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마을만들기” 를 각각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마을만들기” 를 각각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한다.

제5조 중 “마을만들기 사업”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으로, “마을만들기 활동”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동”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마을만들기 사업”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를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마을만들기” 를 각각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마을만들기의”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의” 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를 “주민 소통 공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협의체가” 를 “주민모임이” 로, “마을만들기”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마을환경”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환경”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을자원”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자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공동체”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마을만들기” 를 각각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마을만들기 사업의”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로, “주민협의체는 제7조” 를 “주민모임은 제6조” 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만들기”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1조) 전단 중 “제10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를 “제8조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 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마을만들기”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주민협의체” 를 “주민모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만들기”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주민협의체는” 을 “주민모임은” 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마을만들기 사업 발표회”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발표회” 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로,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5조) 본문 중 “사업”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의 “제3장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마을만들기 정책”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정책” 으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만들기”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마을만들기” 를 “주민모임이 제안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를 “주민 소통 공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마을만들기”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문화체육·주택·주거정비·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 를
“자치행정·문화체육·주택·주거정비·성북형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로, “부서장중” 을 “부서장 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마을만들기”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마을만들기” 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로 한다.

3. 성북구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 중 2명 이내

제4장의 제목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을 “주민 소통 공간 설치·운영” 으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 소통 공간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소통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주민 소통 공간의 기능) 주민 소통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인문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공간
3.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랑방 역할 및 주민 소모임, 주민회의 등 주민활동 공간 지원

4. 성북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5. 성북형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전파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 제목 “(지원센터의 기능)” 을 “(예산 등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 소통 공간, 기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소통 공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위탁관리 및 운영)” 을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 소통 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 소통 공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강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수강료 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금액 등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⑥ 별표 2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고,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하고,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30조) 중 “마을만들기”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예산이 성립된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주민 소통 공간의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1. 수강료(징수 상한 기준)

프로그램명	기 준 시 간	기 준 금 액	비 고
문화취미·교양 생활체육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8시간 이내 프로그램 (4주)	30,000원 이하	※ 1회 2시간 강의 ※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 본인 부담 ※ 2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인 경우 무료로 운영 가능
	8시간 초과 ~ 10시간 이내 프로그램 (5주)	50,000원 이하	

2. 시설 사용료(징수 상한 기준)

센 터 명	시 설 별	기 준 금 액	비 고
성북함께 어울림센터	3층 다목적실	1회당 20,000원	※ 1회 2시간 사용 ※ 장기 대관 및 사용 횟수 제한 등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름
	3층 커뮤니티실	1회당 10,000원	
	4층 소모임실	1회당 10,000원	
508커뮤니티 센터	2층 프로그램실	1회당 10,000원	
	2층 다목적실	1회당 10,000원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 기준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전액 감면
감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0분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100분의 20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일을 곱하여 지급 예① : 4주/주1회 수업인 경우 $4\text{주수강료} \div (4\text{주} \times 1\text{일}) \times \text{잔여일수}$ 예② : 8주/주1회 수업인 경우 $8\text{주수강료} \div (8\text{주} \times 1\text{일}) \times \text{잔여일수}$ 예③ : 5주/주1회 수업인 경우 $5\text{주수강료} \div (5\text{강}) \times \text{잔여일수}$ 예④ : 4주/주2회 수업인 경우 $\text{전체수강료} \div (4\text{주} \times 2\text{강}) \times \text{잔여일수}$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예 : (총수업일수 ÷ 2)를 하여 출석일과 비교 (소수점은 사사오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 고	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전체 수업시간을 의미하며,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수강료 반환신청은 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10일 경과 후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위 1, 2호의 경우 중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④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강신청, 교육안내 및 운영 관련, 통계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원활한 교육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감면신청 관련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강료 감면신청 운영 관련, 통계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감면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강료 감면신청의 감면 확인 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별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u>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마을만들기</u>”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u>마을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u></p> <p>3. “<u>마을만들기 사업</u>”이란 주민</p>	<p><u>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u>자율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 도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u>를 위한 --.</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성북형 마을공동체</u>”란 성북구 주민이 <u>생활환경과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내 관계와 공동 활동을 형성·발전시키는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u></p> <p>3. -----</p>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4. “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역사성·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성북형 마을공동체 -----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
----- 사업을 말한다.

4.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주민공동체 및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북형 마을공동체-----
-----.

1. 성북형 마을공동체-----
-----.
2. 성북형 마을공동체-----
-----.
3. 성북형 마을공동체-----.
4. 성북형 마을공동체-----
-----.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2. (생략)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

----- 성북형 마을공동체 -----

1. ----- 성북형 마을공동체 -----

2. (현행과 같음)

제5조(구청장의 책무) -----

-----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

-----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동 -----

제2장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삭 제>

1. 구 마을만들기 중·장기 구상과 기본 방향

2.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5.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

제6조(시행계획) ① -----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

--.

② ----- 성북형 마을공동체 -----
-----.

1. (현행과 같음)
2. 성북형 마을공동체 -----

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
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
야 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
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
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
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
을만들기 행정협의회(이하“행
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구
청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지
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주도
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 성북형 마을공동체

<삭 제>

<삭 제>

제7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
----- 성북형 마을공동체의 ---

주민 소통 공간 -----

② ----- 주민모임이 -----

----- 성북형 마을
공동체 -----
-----.

1. (현행과 같음)
2. 성북형 마을공동체 환경 ---
--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증진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6.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사업
7.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생략)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과 주민협의체는 제7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선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

3. 성북형 마을공동체 자원-----
4. 성북형 마을공동체 -----
5. 성북형 마을공동체-----
6. 성북형 마을공동체-----
7. ----- 성북형 마을공동체-----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
----- 주민모임은 제6조-----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

② (현행과 같음)

③ ----- 성북형 마을공동체-----.

제9조(사업의 선정) ----- 제8조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
-----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
-----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은 주민과 주민협의체의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 및 주민협의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 내용 및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

-----.

제10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① ----- 성북형 마을공동체 ----- 주민모임-----

-----.

② 성북형 마을공동체 -----
----- 주민모임은 -----

-----.

제11조(사업평가 및 포상)

① ---
-----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발표회 --- 성북형 마을
공동체 사업을 -----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

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신 설>

-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정책 및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과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 마을만들기 사업

----- . <단서 삭제>

<삭 제>
제3장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

-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
-- 성북형 마을공동체 정책 --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
----- .
- ② ----- 성북형 마을공동체-----
----- .
1. 성북형 마을공동체 -----

 2. ----- 주민모임이 제안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
 3. ----- 주민 소통 공간 -----

- <삭 제>
4. -----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
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
행정·문화체육·주택·주거정
비·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부서장중 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주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중 마을만들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
을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
다.

-- 성북형 마을공동체 ---

제15조(구성)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자치
행정·문화체육·주택·주거정
비·성북형 마을공동체·사회
적경제 -----
----- 부서장 중 -----
-----.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성북형 마을공동체-----

3. 성북구 주민공동체운영회 대
표 중 2명 이내

⑤ -----
----- 성
북형 마을공동체 -----
--.

<신 설>

제20조 ~ 제24조 (생략)

<신 설>

제18조 · 제19조 (생략)

제24조(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 소통 공간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소통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 제23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8조 및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9조와 같음)

제4장 주민 소통 공간
설치·운영

제25조(주민 소통 공간의 기능) 주민 소통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인문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공간
3.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랑방 역할 및 주민 소모임, 주민회의 등 주민활동 공간 지원
4. 성북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5. 성북형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전파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예산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 소통 공간, 기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보고
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사업 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발굴·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5.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견학 지원
6.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마을만들기 관련 홍보·전파
8.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

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소통 공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주민 소통 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 소통 공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강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수강료 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금액 등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⑥ 별표 2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고,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신 설>

- 제28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
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생 략)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 있으며, 수강료를 반환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⑧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제31조</u> (생 략)	-----. <u>제30조</u> (현행 제31조와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장 이 동 환